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1,527,262	12,945,818
일반회계	364,742,674	10,942,280
특별회계	66,784,588	2,003,538
공기업특별회계	30,308,968	909,269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0,308,968	909,269
기타특별회계	36,475,620	1,094,269
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사업	20,092,762	602,783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0,367,419	311,023
농공지구조성사업	710,930	21,328
의료급여기금운영	1,588,114	47,64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16,395	21,492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3,000,000	9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005,133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